2026년 6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자료

1.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하며, 노인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종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로 신체적, 정신적손상 및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등 의사에 반하는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재산을 빼앗거나, 착취, 경제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를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1)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을 격리, 증거수집
2) 과장, 국장, 원장 중 누구에게나 보고
3)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4)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4. 노인학대예방

1)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매일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송출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내 방송 실시
3) 월례회의, 업무회의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수시로 공지
4) CCTV 설치
5) 생활관 벽면에 노인학대 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예방자료 게시
6) 종사자 교육 : 분기별 1회 노인학대 예방교육, 연 1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7) 어르신 교육 : 분기별 1회 노인학대 예방교육

5. 신체구속사유와 절차

1) 신체구속사유 : 절박성, 비대체성, 일시성
2) 구속전 절차 : 문제/위험행동 기록➔사례회의or진료➔시설장결재or의사소견서➔보호자 동의➔기록(날짜, 시간, 억제내용, 억제사유, 반응, 부작용, 대상자 및 담당자 성명)
3) 구속 후 절차 : 30분 마다 피부색, 체온 등 관찰, 2시간마다 억제대 해제 후 관절운동범위 및 피부관찰, 8시간마다 억제대가 필요한지 재사정